

월동기 난방유 사용요령

본 자료는 지난 10월 산업자원부에서 작성한 「난방유홍보 추진계획」중 일부를 발췌·편집한 것이다. <편집자 주>

1. 새로운 보일러등유가 보급된 이유

- 대부분의 가정용 보일러는 등유 또는 경유를 사용가능토록 제조되고 있으나, 과거부터의 소비 습관에 따라 소비자가 등유를 선호하여 월동기 간중 등유는 부족하고 경유는 남아 매년 수급상의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.
- 또한, 경유에 대한 교통세 인상으로 경유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의 난방비용이 증가하고 불합리하게 교통세를 납부해야 하는 조세형평상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.
- 이와 같은 석유수급상의 왜곡된 소비구조를 개선하고, 난방용 경유소비자에 대한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'98.8월부터 보일러등유를 신규 공급해 오고 있으며, 금년 월동기부터는 작년도 보다 품질을 개선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.

2. 유종별로 적합한 이용기기

- 보일러등유는 가정용, 상업용 및 중소기업용 보일러의 열원용으로 적합한 유종입니다. 다만, 가정용 중·소형 보일러중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되어 있거나, 설치조건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연소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, 보일러 A/S담당자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
- 실내등유는 팬히터, 로터리히터, 스토브, 온풍기 등 실내용 보조 난방기기와 농산물건조기, 실내등유 전용보일러(보일러등유 사용부적합 보일러 포함) 등의 연료로 적합한 유종입니다.

3. 보일러등유·실내등유의 품질특성

- 보일러등유는 저온하에서의 연소성능을 높이기 위해 유동점을 경유의 영하 12.5°C보다 낮은 영하 15°C로 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. 또한, 금년 월동기부터는 보일러등유의 연소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종류성상(90% 유출온도°C)의 상한치를 350°C에서 325°C로 대폭 낮추어 소비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품질수준을 개선하였으며, 여름용 제품의 겨울철 사용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용 규격을 폐지하였습니다.
- 실내등유는 실내보조난방 연료로 사용이 적합하도록 유황함량을 0.08%에서 0.01%로 낮추고 색상을 더욱 맑게 함으로써, 실내 사용시 불편이 없도록 고급화하였습니다.

4. 보일러등유 사용시 경제적 효과

- 경유($9,200 \pm 50 \text{ kcal/l}$)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보일러등유($8,900 \pm 50 \text{ kcal/l}$)를 사용시 열량저하로 연료소모량이 3~4% 정도 더 소요되나, 보일러등유 가격이 경유보다 약 60원/l 저렴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
- 또한, 실내등유($8,700 \pm 50 \text{ kcal/l}$)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보일러등유를 사용할 경우에 열량증가로 연료소모량이 2~3% 정도가 줄어들고 가격이 30~40원/l 수준이 저렴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됩니다.

예시) 17천㎘/h 용량기준 보일러를 1개월(30일)동안 1일 10시간 사용시 연료비 경제성 분석

유종별	연료소모량(리터)		가격 (원/리터)	연료비용 (천원)
	시간	1개월		
경유	2.17	652	583.74	381
보일러등유	2.25	674	520.76	351
실내등유	2.30	690	555.16	383

주) 1. 보일러 효율은 85% 가정시
2. 유종별 가격은 '99.10월중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기준

5. 혹한시 보일러등유의 사용요령

- 보일러등유 유동점은 경유의 영하 12.5°C보다 낮은 영하 15°C로 저온성능이 보강되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겨울철 사용에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.
- 다만, 겨울철 기온이 영하 15°C 이하가 되는 지역에서는 점화불량, 그을음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를 가급적 옥내에 설치하고, 연료탱크나 배관망은 보온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유통업체의 잔존 보일러등유 처리

- 유통업체의 탱크에 남아 있는 기존 보일러등유는 소비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품질수준에 적합하도록 보정을 거친후 판매하고, 보일러등유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객카드를 작성·관리하는 등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7. 보일러등유·실내등유의 혼·전용 방지대책

- 등유(보일러등유, 실내등유)를 자동차용 연료로 혼·전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, 혼·전용시 품질검사가 용이하도록 등유에 착색제 또는 식별제를 넣어 공급하고 있으며, 관계법도 보완하였습니다.
- 보일러등유에 붉은색 착색제를 넣어 외관상 자동차용경유(갈색) 및 실내등유(무색투명)

와 육안구별이 용이토록 하였고,

- 보일러등유와 실내등유에 무색투명한 식별제를 첨가하여 차량용경유에 고의적으로 혼·전용시 간단한 검사를 통해 적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,
- 석유사업법 및 교통세법상 유사석유제품의 적용대상에 휘발유 및 경유를 포함시켜 불법적인 혼·전용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, 지난해부터 일반판매소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경유에 보일러등유 또는 실내등유를 혼·전용하여 차량에 사용시 차량엔진의 수명단축과 출력저하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8. 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A/S지원

- 소비자에게 보일러등유와 실내등유의 용도와 장점을 정확히 설명하여 올바른 이해를 돋고, 보일러등유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비자 상담 및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, 보일러등유 사용에 따른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특히, 실내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던 소비자가 보일러등유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기기의 점검(A/S 등) 및 연소상태를 꼭 확인 조치하여 주시고, 연소기기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보일러등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, 그을음 발생 및 점화불량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9. 보일러등유 취급과정의 애로사항은

- 보일러등유의 취급 및 소비자 불편사항 등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 석유 담당 공무원 또는 공급사(정유사, 수입사)에게 전달 및 협의하여 주심으로서, 소비자 불만이 곧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